

#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

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제공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효능 · 효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, 기재하여 일반 소비자에 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 시(안) 행정예고 했다.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.

- 편집자 주 -

#### 주요 내용

- 가, 일반의약품의 요약기재 제도 도입(안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7호)
- 1) 용기 · 포장 등에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 좁은 면적에 많은 내용을 표시하여 오히려 잘 읽지 않는 현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
- 2) 일반의약품의 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, 그 밖의 사용 또는 취급할 때 필요한 주의 사항을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하고 외부용기나 포장에 요약 기재하는 제도 도입
- 3) 일반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신속, 정확하게 이해하여 발생 가능한 오·남용 및 부작용 방지할 것으로 기대
- 나. 품목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의약품 정보 안내 사이트의 명칭 및 주소 변경(안 제6조제9항)
  - 다. 사용상의 주의사항 외 안전사용 방법 표시 권장(안 제9조제7호)
- 1) 제품의 특성에 맞는 안전사용방법 안내가 없어 피부에 점착하는 제품의 탈부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
- 2) 첩부제, 카타플라스마제 등 피부에 점착하는 품목의 경우, 탈·부착 방법 등 안전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문구 기재를 권장함
  - 3) 점착력이 있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
- 라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른 재검토기한(2013. 12, 20,)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(안 제18호)

##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일반의약품의 경우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69조제8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, 효능·효과를 기재할 때 이들 내용이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 등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,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는 기재내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제9항 중 "온라인 전자민원창구(ezdrug.kfda.go.kr)"를 "온라인의약도서관 (http://drug.mfds.go.kr)"으로 한다.

제9조에 제목 외의 부문을 1항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첩부제, 카타플라스마제 등 피부에 점착하는 품목의 경우, 탈·부착 방법 등 안전사용방법의 기재

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② 일반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별표 3과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2의 일반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기재요령에 따라 요약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.

제18조 중 "2013년 12월 20일"을 "2016년 12월 20일"로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개정규정은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이 개 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# 일반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기재요령

#### 1. 공통사항

가. 소아가 주로 사용(복용)하는 의약품은 소아에 해당하는 허가사항만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다.



나. 효능 · 효과. 용법 · 용량은 잘 보이는 면에 기재한다.

다. 요약 기재한 외부용기 또는 포장에는 글상자에 다음의 내용과 '부작용 보고: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워(전화번호)'를 기재한다.

이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허가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사용(복용)전 반드시 첨부문서 (또는 '포장의 기재사항')을 확인할 것

- 라.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는 바코드를 인쇄한다.
- 마. 글자크기, 줄 간격 등 기타 사항은 이 고시 해당 조항을 따른다.
- 2. 효능 · 효과

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선택할 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효능 · 효과를 요약하여 기재한다.

- 3. 용법 · 용량
- 가. 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따라 실제 복용하는 내용고형제는 원칙적으로 낱알 단위 제형의 양으로 "1회 ㅇ정. 1일 최대 ㅇ정 투여" 등으로 기재한다.
  - 나. 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용법은 외부 포장에 "의사. 약사와 상의하여 사용"을 기재한다.
  - 4. 사용상의 주의사항

가. 다음의 순서대로 요약 기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제목과 그 내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

- 1. 경고
- 2. 다음 사람(경우)은 복용하지 말 것
- 3. 다음 사람은 복용전 의사·치과의사·약사와 상의할 것
- 4. 복용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, 치과의사, 약사와 상의할 것

나. 제목 밑의 내용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위주로 불릿기호를 사용하여 명확히 요약 기재한다.

예)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

· 아세트아미노펨 과민증

· 소화성 궤양

· 심한 혈액 이상

· 심한 간장애

· 심한 콩팥장애

· 심한 심장기능저하

#### 5. 기재형식

가. 배경과 글자색은 가독성을 높이는 색상을 이용하며, 원칙적으로 배경은 흰색, 글자는 검은색으로 기재한다.

나. 항목과 항목간은 굵은 선, 항목 내 내용은 가는 선으로 구분하며, 선의 색상은 가독성을 높이는 색으로 선택할 수 있다.

다. 경고 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되 배경을 노란색으로 한다. 🔊

항목	기재내용
효능·효과	[효능·효과] 내용요약
용법 · 용량	(용법·용량) 내용요약
사용상의 주의사항	(사용상의 주의사항)
	1. 경고 : 요약기재(사람, 성분, 행위 등)
	2. 다음 사람은 복용(사용)하지 말 것 : 사람 요약기재
	3.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(사용)하지 말 것/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
	: 성분 또는 행위 요약기재
	4. 다음 사람은 복용 전 의사·치과의사·약사와 상의할 것: 사람 요약기재
	5. 복용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, 치과의사, 약사와 상의할 것 : 요약기재
	이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허기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복용 전 반드시 첨부문서를
	확인할 것

### 신 · 구조문 대비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세부 기재방법) ① 법 제56조제1항제9호, 제58조	제6조(세부 기재방법) ① 일반의약품의 경우 「의약품 등의
제1호에 따라 용법 · 용량, 그 밖의 사용 또는 취급할 때 필	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69조제8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용
요한 주의 사항을 외부 용기나 포장에 기재할 때 이들 내용	법 · 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, 효능 · 효과를 기재할 때 이
이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	들 내용이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
기재요령 및 순서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. 다만, 안전상비의	의2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 등의 기재요령에 따
약품의 경우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69조제8항	라 기재할 수 있다.이 경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, 제
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용법 · 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, 효	조판매품목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는 기재내용에 대하
능 · 효과를 기재할 때 별표 2의2의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	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


현 행	개 정 안
용기 또는 포장 등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. 이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하가를 받은 자,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는 기재내용에 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	
②~⑧ (생 략) ⑨ 용기나 포장에는 자세한 품목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 인할 수 있는 방법(업체 홈페이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(ezdrug.kfda.go.kr)의 '의약품등 정 보' 란 참조 등)을 기재한다.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9조(권장사항) 허가받거나 신고한 기재사항 외에 소비자 및 의약 전문가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품목의 특성 및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기 재할 것을 권장한다.	제9조(권장사항) ① 
1. ~ 6. (생 략) 〈신 설〉 〈신 설〉	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첩부제, 카타플라스마제 등 피부에 점착하는 품목의 경우, 탈·부착 방법 등 안전사용방법의 기재 ② 일반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별표 3과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2의 일반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기재요령에 따라 요약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.
제18조(재검토기한) ①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.	제 18조 (재 검 토 기 한 ) ① 